

※ 번역문은 민원 신청을 위한 참고용이며, 기존의 한글 서식에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こちらの翻訳文は民願申請の参考用であり、提出時には既存の韓国語の書式に韓国語でご記入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2. 13.>
■ 求職者の就業促進及び生活安定支援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別紙第1号書式] <改正2024年2月13日>

취업지원 신청서 就業支援申請書

- ※ 제8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8ページの留意事項及び作成方法をよく読んで記入し、申請人はグレーの欄には記入しないでください。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4쪽 중 1쪽)
※ []には、該当する項目に「✓」をつけてください。 (全4ページ中1ページ)

접수번호 受付番号	접수일시 受付日時	처리기간 処理期間	1개월 1か月
--------------	--------------	--------------	------------

①신청인 ①申請人	성명 氏名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外国人登録番号)
	주소 住所	
	전화번호(휴대전화) 電話番号 (携帯電話番号)	전자우편주소 メールアドレス

②동의자 (신청인의 가구원) ②同意者 (申請人 の世帯員)	성명 氏名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外国人登録番号)	신청인과의 관계 申請人との 関係	휴대전화 번호 携帯電話番号	가구원 포함・ 제외사유(필요시) 世帯員を含む ・除外する事由 (必要時)
				[] 안내 문자 수신 동의 [] 案内メッセージの 受信同意	
				[] 안내 문자 수신 동의 [] 案内メッセージの 受信同意	
				[] 안내 문자 수신 동의 [] 案内メッセージの 受信同意	
				[] 안내 문자 수신 동의 [] 案内メッセージの 受信同意	
				[] 안내 문자 수신 동의 [] 案内メッセージの 受信同意	

※ “동의자(신청인의 가구원)”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해 첨부합니다.
※ 「同意者(申請人の世帯員)」欄が足りない場合は、別途作成して添付してください。

③ [] 취업지원 서비스 수급자격 ③ [] 就業支援サ ビスの受給 資格	<p>15~64세 중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합니다)의 100분의 100 이하인 사람 또는 15~34세[「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기간(이하 “이행기간”이라 합니다)을 가산합니다] 중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인 사람</p> <p>15~64歳の方のうち、世帯単位の平均月収が「国民基礎生活保障法」第2条第11号による基準中位所得（以下、「基準中位所得」といいます）の100分の100以下の者、又は15~34歳〔「兵役法」第3条に基づく兵役の義務を履行した場合、「求職者の就業促進及び生活安定支援に関する法律施行令」第2条第5項による期間（以下、「履行期間」といいます）を加算します〕の方のうち、世帯単位の平均月収が基準中位所得の100分の120以下の者</p> <p>* 65~69세 중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 이하인 사람 및 15~34세(「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이행기간을 가산합니다) 중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을 넘는 사람은 취업취약계층으로 지원합니다.</p> <p>*65~69歳の方のうち、世帯単位の平均月収が基準中位所得の100分の100以下の者、及び15~34歳（「兵役法」第3条に基づく兵役の義務を履行した場合、履行期間を加算します）の方のうち、世帯単位の平均月収が基準中位所得の100分の120を超える者は、就業脆弱階層として支援します。</p> <table><tr><td>취업취약계층 여부</td><td>1선택[]</td><td>2선택[]</td><td>해당 없음 []</td></tr><tr><td>就業脆弱階層의該當の有無</td><td>1選択 []</td><td>2選択 []</td><td>該当なし []</td></tr></table> <p>*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4쪽 작성방법의 취업취약계층 표를 참고하여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就業脆弱階層に該当する場合、4ページの作成方法の就業脆弱階層表を参考に該当する番号を記入します。</p>	취업취약계층 여부	1선택[]	2선택[]	해당 없음 []	就業脆弱階層의該當の有無	1選択 []	2選択 []	該当なし []
취업취약계층 여부	1선택[]	2선택[]	해당 없음 []						
就業脆弱階層의該當の有無	1選択 []	2選択 []	該当なし []						
④ [] 구직촉진 수당 수급자격 ④ [] 求職促進 手当の受 給資格	<p>요건심사형: 15~69세 중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이면서 아래 ① 및 ②를 모두 충족한 사람</p> <p>要件審査型：15~69歳の方のうち、直近2年以内に就業経験が100日（又は800時間）以上であると同時に、以下の①及び②の両方を満たす者</p> <p>①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 ①世帯単位の平均月収が基準中位所得の100分の60以下</p> <p>②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4억원[15~34세(「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이행기간을 가산합니다)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이 서식에서 “고시금액”이라 합니다)] 이하 ②世帯員の所有する財産の総額が4億ウォン〔15~34歳（「兵役法」第3条に基づく兵役の義務を履行した場合、履行期間を加算します）の方は、「求職者の就業促進及び生活安定支援に関する法律施行令」第3条第3項但し書きに基づき雇用労働部長官が定めて告示する金額（以下、本書式において「告示金額」といいます）〕以下</p> <p>선발형(비경제활동인구): 15~69세 중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100일(또는 800시간) 미만이면 서 아래 ① 및 ②를 모두 충족한 사람</p> <p>選拔型（非經濟活動人口）：15~69歳の方のうち、直近2年以内に就業経験が100日（又は800時間）未滿であると同時に、以下の①及び②の両方を満たす者</p> <p>①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 ①世帯単位の平均月収が基準中位所得の100分の60以下</p> <p>②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4억원 이하 ②世帯員の所有する財産の総額が4億ウォン以下</p> <p>선발형(청년): 15~34세(15~34세(「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이행기간을 가산합니다) 중 아래 ① 및 ②를 모두 충족한 사람</p> <p>選拔型（青年）：15~34歳（15~34歳（「兵役法」第3条に基づく兵役の義務を履行した場合、履行期間を加算します））の方のうち、以下の①及び②の両方を満たす者</p> <p>①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 ①世帯単位の平均月収が基準中位所得の100分の120以下</p> <p>②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고시금액 이하 ②世帯員の所有する財産の総額が告示金額以下</p>								

본인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인정을 받지 못하고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 인정만을 받은 경우, 취업지원서비스만 지원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私は、求職促進手当の受給資格の認定を受けられず、就業支援サービスの受給資格の認定のみを受けた場合、就業支援サービス支援のみを受けることに同意します。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同意する [] 同意しない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을 신청합니다.

「求職者の就業促進及び生活安定支援に関する法律」第8条第1項・第2項及び同法施行規則第4条第2項に基づき、上記の通り就業支援サービス及び求職促進手当の受給資格の認定を申請します。

년 월 일
年 月 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申請人 (署名又は印)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地方雇用労働庁（支庁）長・済州特別自治道知事 殿

첨부서류 添付書類	해당 없음(다만, 공적 자료 조회 등으로 확인되지 않은 자료는 신청인에게 추가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該当なし（但し、公的資料の照会等により確認がとれない資料は、申請人に追加提出を求めることがあります。）	수수료 없음 手数料なし
--------------	---	-----------------

※ 아래 난은 적지 않습니다.

※ 以下の欄は記入しないでください。

처 리 処理	[] 인정 [] 불인정 [] 認定 [] 不認定		수급자격 인정 유형 : 受給資格の認定の類型 :						
			수급자격 불인정 사유 : 受給資格の不認定事由 :						
결 재 決裁	담당 担当	팀장 チーム長		소장 (과장) 所長 (課長)		청장 (지청장) 庁長 (支庁長)		결재 연월일 決裁年月日	
								. . . 年 月 日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취업지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就業支援申請のための個人情報及び固有識別情報の取得・利用及び提供同意書

1.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및 지원 내용

1. 個人情報及び固有識別情報の提供を受ける機関及び支援内容

- 기관: 고용노동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관할 직업안정기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5호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기관
- 機関: 雇用労働部、「求職者の就業促進及び生活安定支援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第4条第2項による管轄職業安定機関、「求職者の就業促進及び生活安定支援に関する法律」第8条第3項第5号の社会保障情報システムを構築・運用する機関
- 지원 내용: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이하 “취업지원서비스”라 함)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이하 “구직촉진수당”이라 함)
- 支援内容: 「求職者の就業促進及び生活安定支援に関する法律」第2条第1号による就業支援サービス(以下、「就業支援サービス」という)及び同法第18条に基づく求職促進手当(以下、「求職促進手当」という)

2. 개인정보(DB)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個人情報(DB)及び固有識別情報の取得・利用目的

-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인정, 수급자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 就業支援サービス及び求職促進手当の受給資格の認定、受給者の管理のための個人情報の取得・利用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각 호의 정보통신망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 「求職者の就業促進及び生活安定支援に関する法律」第8条第3項各号の情報通信網などが保有する資料又は情報の利用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법원·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세청 등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
- 「求職者の就業促進及び生活安定支援に関する法律」第9条第2項各号に基づき法院・行政安全部・保健福祉部・国税庁などの国家機関の長、地方自治体の長及び関連機関・団体の長が保有する資料又は関連ネットワークの利用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보유·제공하는 과세 정보의 이용
- 「求職者の就業促進及び生活安定支援に関する法律」第9条第3項に基づき管轄税務署長が保有・提供する課税情報の利用

3.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항목

3. 個人情報及び固有識別情報の取得・利用項目

- 수급자격 인정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신청인의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受給資格の認定を受けようとする就業支援申請人の情報: 氏名、住民登録番号、外国人登録番号、住所、電話番号、携帯電話番号、メールアドレス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각 호의 정보통신망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망,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제1항제7호의 정보전산망,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망,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의 국세정보통신망,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의 지방세정보통신망
- 「求職者の就業促進及び生活安定支援に関する法律」第8条第3項各号の情報通信網などが保有する資料又は情報: 「雇用保険法」に基づき雇用労働部長官が設置・運用する情報通信網、「雇用政策基本法」第13条の2第1項第7号の情報ネットワーク、「国民健康保険法」に基づき保健福祉部長官が設置・運用する情報通信網、「国税基本法」第2条第19号の国税情報通信網、「社会保障基本法」第37条第2項の社会保障情報システム、「電子政府法」第37条第1号による行政情報共同利用センター、「地方税基本法」第2条第1項第28号の地方税情報通信網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법원·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세청 등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 사업자등록부,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공무원연금·공무원재해보상급여·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농업직불금·농지연금의 가입 여부, 가입 종류, 소득정보, 부과액 및 수급액, 건물, 토지, 자동차, 건설기계 및 선박의 공시가격 또는 과세표준액,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장애 정도, 북한이탈주민확인증명서,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취득 정보, 출입국 정보
- 「求職者の就業促進及び生活安定支援に関する法律」第9条第2項各号に基づき法院・行政安全部・保健福祉部・国税庁などの国家機関の長、地方自治体の長及び関連機関・団体の長が保有する資料又は情報: 事業者登録簿、国民健康保険・国民年金・雇用保険・労災補償保険・報奨給付・公務員年金・公務員災害補償給付・軍人年金・私立学校教職員年金・別定郵便局年金・農業直接支払交付金・農地年金の加入有無、加入の種類、所得情報、賦課額及び受給額、建物、土地、自動車、建設機械及び船舶の公示価格又は課税標準額、住民登録票謄本・抄本、家族関係登録簿(家族関係証明書、基本証明書、婚姻関係証明書)、障害の程度、北韓離脱住民確認証明書、社会保障給付の受給履歴、「国家技術資格法」その他の法令による資格取得情報、出入国情報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 「求職者の就業促進及び生活安定支援に関する法律」第9条第3項に基づき管轄税務署長が保有する課税情報

4.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個人情報及び固有識別情報の保存及び利用期間

-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인정, 수급자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30년
- 就業支援サービス及び求職促進手当の受給資格の認定、受給者管理のための個人情報の取得・利用: 30년

5. 제3자 제공 및 공유에 관한 사항

5. 第三者への提供及び共有に関する事項

- 제공 목적: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인이 같은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갖추었는지 결정하기 위한 수급 요건의 확인·조사
- 提供目的: 「求職者の就業促進及び生活安定支援に関する法律」第8条第3項による就業支援申請人が同法第6条及び第7条に基づく就業支援サービス及び求職促進手当の受給資格があるか決定するための受給要件の確認・調査
- 제공받는 자: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각 호의 정보통신망 등을 운영하는 해당 기관·단체의 장 또는 같은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법원·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세청 등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
- 提供を受ける者: 「求職者の就業促進及び生活安定支援に関する法律」第8条第3項各号の情報通信網などを運用する当該機関・団体の長、又は同法第9条第2項及び第3項による法院・行政安全部・保健福祉部・国税庁などの国家機関の長、地方自治体の長及び関連機関・団体の長
- 제공할 개인정보 범위: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 提供する個人情報の範囲: 氏名、住民登録番号(外国人登録番号)など
-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5년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종료일부터 3년
- 提供を受ける者の個人情報の保有・利用期間: 「求職者の就業促進及び生活安定支援に関する法律」第27条に基づき、受給者が虚偽の申請やその他の不正な方法で求職促進手当などの支給を受けた場合、その支給決定を取り消した日から5年、又は同法第29条に基づく就業支援の終了日から3年

6.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거부권,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6. 個人情報及び固有識別情報の取得・利用、並びに提供への同意の拒否権、同意拒否による不利益の案内

-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就業支援受給資格認定のための個人情報及び固有識別情報の取得・利用及び提供に関する同意書について、あなたには同意を拒否する権利があり、同意しない場合は就業支援サービスの申請はできません。

7.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과 관련하여 등록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는 위에 명시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7. 就業支援サービス及び求職促進手当に関連して登録された個人情報及び固有識別情報は、上記に明示された目的以外の目的に使用されることはありません。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 個人情報の提供に 対する同意の有無	본인은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신청인과 신청인의 가구원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수집·이용 및 제공을 포함)에 동의합니다. 私は、就業支援サービス又は求職促進手当の受給資格の認定を受けようとする就業支援申請人と申請人の世帯員として、「個人情報保護法」第15条に基づき、自身の個人情報の提供（個人情報取扱者による取得・利用及び提供を含む）に同意します。	☐ 동의함 ☐ 동의する ☐ 동의하지 않음 ☐ 동의しない
민감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 センシティブ情報 の提供に対する同 意の有無	본인은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신청인과 신청인의 가구원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본인의 민감정보 제공(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수집·이용 및 제공을 포함)에 동의합니다. 私は、就業支援サービス又は求職促進手当の受給資格の認定を受けようとする就業支援申請人と申請人の世帯員として、「個人情報保護法」第23条に基づき、自身のセンシティブ情報の提供（個人情報取扱者による取得・利用及び提供を含む）に同意します。	☐ 동의함 ☐ 동의する ☐ 동의하지 않음 ☐ 동의しない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 固有識別情報の提 供に対する同意の 有無	본인은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신청인과 신청인의 가구원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본인의 고유식별정보 제공(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수집·이용 및 제공을 포함)에 동의합니다. 私は、就業支援サービス又は求職促進手当の受給資格の認定を受けようとする就業支援申請人と申請人の世帯員として、「個人情報保護法」第24条に基づき、自身の固有識別情報の提供（個人情報取扱者による取得・利用及び提供を含む）に同意します。	☐ 동의함 ☐ 동의する ☐ 동의하지 않음 ☐ 동의しない
과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 課税情報の提供に 対する同意の有無	본인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과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私は、「求職者の就業促進及び生活安定支援に関する法律」第9条第4項に基づき管轄税務署長から提供を受けた課税情報を、「個人情報保護法」第17条に基づき、保健福祉部長官が構築・運用する「社会保障基本法」第37条第2項による社会保障情報システムに提供することに同意します。	☐ 동의함 ☐ 동의する ☐ 동의하지 않음 ☐ 동의しない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여부 個人情報の第三者 への提供に対する 同意の有無	본인은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신청인과 신청인의 가구원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私は、就業支援サービス又は求職促進手当の受給資格の認定を受けようとする就業支援申請人と申請人の世帯員として、「個人情報保護法」第17条に基づき、自身の個人情報を第三者に提供することに同意します。	☐ 동의함 ☐ 동의する ☐ 동의하지 않음 ☐ 동의しない
불이익 안내 확인 여부 不利益の案内に対 する確認の有無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거부권,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를 확인하였습니다. 個人情報及び固有識別情報の取得・利用及び提供への同意に対する拒否権、同意の拒否による不利益に関する案内を確認しました。	☐ 동의함 ☐ 동의する ☐ 동의하지 않음 ☐ 동의しない

- ※ 14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동의해야 합니다.
※ 14歳未満の者に対しては、必ず法定代理人の同意が必要です。
※ 아래의 동의는 휴대전화 문자 등 전자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 以下の同意は、携帯電話のメッセージなどの電子的な方法でも可能です。

본인은 위 개인정보 제공, 불이익 안내의 동의 또는 확인 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선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私は、上記個人情報の提供・不利益の案内に対する同意、又は確認の有無に対し、上記の通り選択したことを確認します。

	년	월	일
	年	月	日
신청인 申請人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가구원 1 世帯員1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가구원 2 世帯員2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가구원 3 世帯員3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가구원 4 世帯員4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가구원 5 世帯員5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担当公務員 確認事項	1.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 健康保険資格確認書 2. 검정고시합격증명서 2. 高等学校卒業程度検定試験合格証明書 3. 고등학교졸업증명서 3. 高等学校卒業証明書 4.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4. 国家有功者(遺族)/5・18民主有功者(遺族)確認書 5. (국세)납세증명서 5. (国税)納税証明書 6. 병적증명서 6. 兵籍証明書 7.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7. 付加価値税課税標準証明願 8. 사업자등록증명 8. 事業者登録証明 9. 소득금액증명 9. 所得金額証明	10.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0. 外国人登録事実証明 11. 주민등록표 등·초본 11. 住民登録票謄本・抄本 12. 장애인증명서 12. 障害者証明書 1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13. 出入国に関する事実証明 14.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4. 就業支援対象者証明書 15. 폐업사실증명 15. 廃業事実証明 16. 한부모가족증명서 16. 一人親家庭証明書 17. 휴업사실증명 17. 休業事実証明	수수료 없음 手数料なし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行政情報の共同利用に関する同意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과 신청인의 가구원에 대한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私は、本件の業務処理に関して、担当公務員が「電子政府法」第36条第1項による行政情報の共同利用を通じて、申請人と申請人の世帯員に対する上記の担当公務員確認事項を確認することに同意します。

* 담당 공무원이 해당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申請人が担当公務員による当該書類の確認に同意しない場合は、関連書類を直接提出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 14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동의해야 합니다.

※14歳未満の者に対しては、必ず法定代理人の同意が必要です。

※ 아래의 동의는 휴대전화 문자 등 전자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以下の同意は、携帯電話のメッセージなどの電子的な方法でも可能です。

신청인 (서명 또는 인)
申請人 (署名又は印)
가구원 1 (서명 또는 인)
世帯員1 (署名又は印)
가구원 2 (서명 또는 인)
世帯員2 (署名又は印)
가구원 3 (서명 또는 인)
世帯員3 (署名又は印)
가구원 4 (서명 또는 인)
世帯員4 (署名又は印)
가구원 5 (서명 또는 인)
世帯員5 (署名又は印)

유의사항 留意事項

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수급자격 확인·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기한을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求職者の就業促進及び生活安定支援に関する法律」第10条第1項本文に基づき申請書を提出した日から1か月以内に受給資格の認定の可否を決定し通知することを原則としますが、同項但し書きに基づき受給資格の確認・調査に日数がかかるなどの特別な事由がある場合は、通知期限を最大7日間延長することがあります。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격자에 선정되거나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급받는 등의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결정이 취소되거나 구직촉진수당 등의 반환명령과 추가 징수를 받을 수 있으며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2. 虚偽の申請その他の不正な方法で受給資格者に選定されるか、又は受給資格の認定を受けて求職促進手当などの支給を受けるなどの不正行為が確認された場合は、「求職者の就業促進及び生活安定支援に関する法律」第27条、第28条及び第29条に基づき求職促進手当などの支給決定が取り消されたり求職促進手当などの返還命令と追加徴収の措置が取られることがあり、就業支援サービス又は求職促進手当の支給が終了となることがあります。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격자에 선정되거나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급받는 등의 부정행위를 다른 사람과 공모한 경우에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에 따라 그 공모한 사람도 구직촉진수당 등의 반환명령과 추가 징수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虚偽の申請その他の不正な方法で受給資格者に選定されるか、又は受給資格の認定を受けて求職促進手当などの支給を受けるなどの不正行為を他人と共謀した場合は、「求職者の就業促進及び生活安定支援に関する法律」第28条第3項に基づき、それを共謀した者も求職促進手当などの返還命令と追加徴収の措置に対して連帯責任を負います。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격자에 선정되거나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급받는 사람과 이를 공모한 사람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虚偽の申請その他の不正な方法で受給資格者に選定されるか、又は受給資格の認定を受けて求職促進手当などの支給を受けた者と、それを共謀した者は、「求職者の就業促進及び生活安定支援に関する法律」第38条第2項に基づき、1年以下の懲役又は1千万ウォン以下の罰金に処されることがあります。
5.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선발형)은 예산의 범위에 따라 그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求職者の就業促進及び生活安定支援に関する法律」第7条第2項各号による求職促進手当の受給資格(選拔型)は、予算の範囲によってその受給資格が認められないことがあります。

작성방법 作成方法

1. ① 및 ②란은 신청인 및 신청인의 가구원에 관한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②란에 적은 가구원의 인적사항 등은 신청인의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하는 경우)에 활용됩니다.
 1. 欄①及び②は、申請人及び申請人の世帯員に関する当該事項を記入します。欄②に記入した世帯員の人的事項などは、申請人の就業支援受給資格認定のための個人情報の取得・利用及び提供(同意する場合)に活用されます。
 2. ③란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 표시합니다.
 2. 欄③は、就業支援サービスを申請する場合、該当する事項([])に「√」をつけてください。
- ③란의 ‘취업취약계층’은 아래 표를 확인하여 해당하는 번호를 적습니다. 아래 각 분류의 세부 요건은 취업지원제도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별표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欄③の「就業脆弱階層」は、以下の表を確認して該当する番号を記入します。以下の各分類の細部要件は、就業支援制度に関する雇用労働部長官の告示(「国民就業支援制度運営規定」別表1)をご参照ください。

①	기초연금 수급자 등 基礎年金 受給者など	②	생계급여 수급자 生計給付金受給者	③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ホームレスなど非 住宅居住者	④	북한이탈주민 北韓離脱住民	⑤	여성가장주 女性世帯主
⑥	결혼이민자 結婚移民者	⑦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 結婚移民者の 外国人子女	⑧	신용회복지원자 信用回復支援者	⑨	위기청소년 등 危機青少年など	⑩	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自由貿易協定 による失業者

⑪	건설일용직 근로자 建設日雇 労働者	⑫	국가유공자 가무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国家有功者の 世帯員のうち 就業支援対象者	⑬	취업맞춤특기병 就業特化特技兵	⑭	미혼모(부)・ 한부모 未婚の母(父) ・一人親	⑮	청소년부모 青少年期の親
⑯	구직단념청년 求職断念青年	⑰	청년 青年	⑱	대학교(대학원) 졸업예정자 大学(大学院) 卒業予定者	⑲	산업재해로 장애를 입은 사람 労災による 障害者	⑳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 사업장의 실직자 雇用危機地域又は 雇用災難地域の 事業場の失業者
㉑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 해당 이직자 雇用安定資金の 支援要件に該当 する転職者	㉒	「기업 활력 제고 를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참여자 「企業活力向上の ための特別法」 による参加者	㉓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特別雇用支援業種の 失業者	㉔	영세 자영업자 零細自営業者	㉕	소상공인 재취업 ・재창업 지원 추 천을 받은 자 小規模企業の再就 職・再起業支援の 推薦を受けた者
㉖	노무제공자 등 勞務提供者 など	㉗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直接雇用事業の 参加者						

3. ④란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하면서 구직촉진수당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 표시합니다.
3. 欄④は、就業支援サービスを申請すると同時に求職促進手当も申請する場合、当該箇所（[]）に「√」をつけてください。
-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就業支援サービスの受給資格申請を行っていない者は、求職促進手当の受給資格を申請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

처 리 절 차

処理の流れ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この申請書は以下のように処理されます。

